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지원규모 : 50개사* 이상

다.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이 직접 보수를 지급함.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라.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4페이지 지원분야 참조)

마. 지원기간 :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년 12월(초) 이내

또는 '24년 4월(초) 이내 (선택 가능)

※ 용어의 정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기업 : 컨설팅 지원을 신청한 과제가 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와 협약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중소기업
- 전문기관 : 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지칭함.
- 수행기관 : 컨설턴트 풀 구성, 지원대상기업·컨설턴트와의 협약 관리, 컨설팅 과제수행 관리, 사업비의 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운영을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이 선정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지칭함.
- 컨설턴트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수행기관의 방산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 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참조

2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다음 각 호(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방위산업(방산)이란? 「방위산업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방위산업물자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과 관련된 산업

* “방위산업물자등”이란?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물자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무기체계(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한 것)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방위산업체 중 중소기업, 또는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일반업체)로서 “방위산업물자등”을 연구개발·생산하거나 방위산업체에 납품(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포함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 기술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판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3.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 전년도('22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 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원(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8일의 경우

- 총 컨설팅 보수 : 13,626,000원 (757,000원 × 18일)
- 정부지원금 : 10,219,500원 (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3,406,500원 (총 컨설팅 보수 × 25%)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이 직접 보수를 지급함.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 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법률 분야 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국방 신산업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컨설팅 과제의 신청을 장려하며, 산업계·학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초빙하여 컨설팅 신청 가능

* 단, 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제33조에 따른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므로, 해당 전문가가 기존에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경우 컨설팅 신청 전 풀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 중에 있는 각종 방산(방위사업청 및 산하기관 주관) 연구개발·연구개발지원사업 등 과제 관련, **주관기업 선정 또는 개발 수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계획서/제안서 작성, 선정·수행평가 대응, 개발원가 산정, 연구개발 기술지원, 시험평가, 규격화·목록화 등 각 사업 단계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청 가능**

※ 지원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방산 참여 경험·실적이 없거나(신규 진입 희망) 방산 부문 비중이 낮은(민수 위주) 일반업체의 경우, **방위산업에 신규 진입 또는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신청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이러한 기업이 (기업 내부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예시 : 비(非)방산품의 공정·품질관리, 비(非)방산기술의 보호, 환경·안전 인증, 경영혁신·조직관리 등)를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방산 부문 비중이 높은 일반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방위산업 안전체계 지원사업」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52)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함.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055-751-4918)

※ 지원분야 관련 예년과 달라진 사항

-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시 2가지 경우에 한해 대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만 진행
 - ① 컨설팅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 ② 국기연 주관의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서 최근 5년 사이에('18~'22년) “성공” 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3. 5.24.(수) ~ 6.21.(수)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23년 6월 이후에도 수시로 모집하며 '24년 2월까지 접수함.

○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컨설턴트 검색·매칭 방법 포함) : [붙임1] 참조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02-3270-6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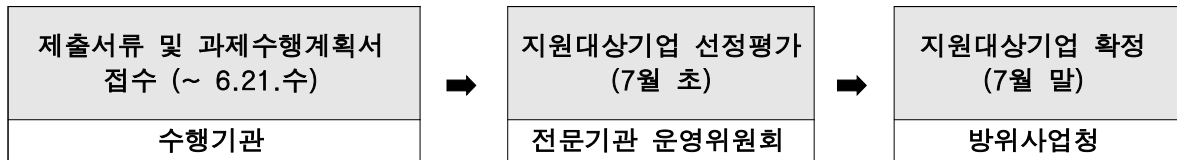
〈 신청절차 요약 〉 *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붙임1] 참조

- ① 기업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 및 지원 세부분야 선택(필요시 수행기관 상담)
↓
-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 (필요시 수행기관 상담)
-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
-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붙임2] 참조

5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지원대상기업 선정 절차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컨설턴트 및 신청기업 대면평가가 원칙

- ※ 컨설턴트가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발표, 신청기업 참석 (질의응답 포함)
- ※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는 신청된 컨설팅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일수)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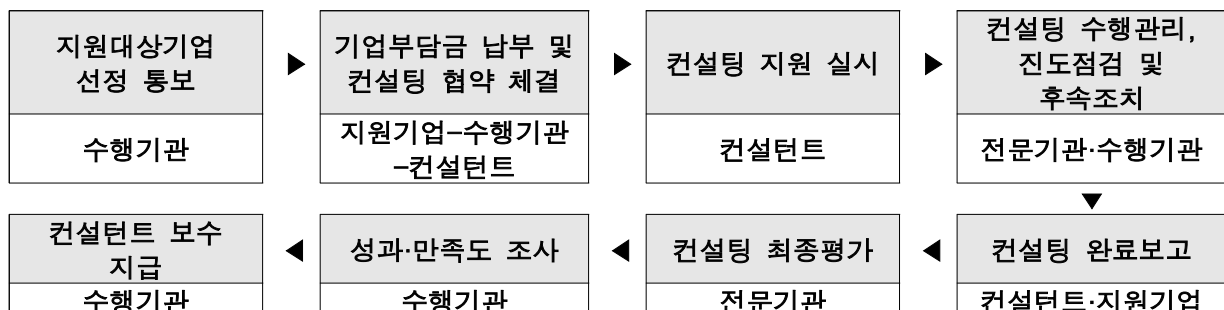
☞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하여 대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만 진행 가능

- 국기연 주관의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서 최근 5년 사이에 ('18년~'22년) “성공” 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컨설팅 지원일수가 7일 이내인 단기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 평가항목 : [붙임3]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기술성(기술보유·개발 실적 등),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 컨설팅의 목적성(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대비 타당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 (구체성·실행가능성, 컨설턴트 역량·적합성 포함)
- 기대효과(방산 진입·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경쟁력 강화 효과 등)
- 우대·감점사항*(만점의 3% 범위 내) * 기준: 방사청 훈령 제786호 제13조제⑤항 및 [별표1]
 - 우 대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1.5%),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 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1%)
 - 감 점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포기 기업(△1%)

나. 컨설팅 지원 절차



6

신청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필독)

가. 전년도('22년)에 본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년도와 상이한 컨설팅 지원분야(기술*, 경영, 법률, 행정 등 대분류)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나. 기업은 1개 지원분야(대분류)의 1개 컨설팅 과제를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복수*의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신청 가능

※ 이 경우 필히 수행기관 상담

* 각자의 컨설턴트는 동일 컨설팅 지원분야(대분류) 내에서 서로 다른 세부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각 세부분야 간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신청가능 범위(1개 과제)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이 제한됨.

* 컨설턴트 각자 간 컨설팅 수행 내용 및 수행(투입) 일자는 상이하여야 하며, 총괄컨설턴트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다. 컨설턴트는 1개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컨설턴트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이미 3년(3회)의 컨설팅을 지원한 경우 신청이 제한됨. 또한 컨설턴트는 본 지원사업의 사업기간('23. 5월~ '24년 4월) 연간 1개 과제(지원대상기업 1개사)를 초과하여 선정될 수 없음.

라. 기업과 매칭한 컨설턴트가 기존에 수행기관 방산 컨설턴트 풀(Poo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업 신청 전까지 풀에 등록*(한국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 - “컨설턴트 회원가입”)하여야 함.

* 방위사업청 훈령 제33조에 따른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이 반려되고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컨설팅회사 등)은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없음.

* 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는 전원 개인 자격이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이 아님.

마. 컨설팅 지원(수행)기간은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3년 12월(초) 이내 또는 '24년 4월(초) 이내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간 중 단기(지원 일수 7일 이내)* 과제의 컨설팅 신청도 가능

바. 신청기업과 컨설턴트는 [붙임4]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붙임5]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 일반조건)*를 충분히 이해 하고 신청 요망

※ 기업 및 컨설턴트 역할과 의무, 컨설팅 수행 및 수행일지·산출물·보고서 등 제출 절차, 협약 변경·해약 조건, 컨설팅 보수의 미지급·환수 조건 등

사.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은 **기업과 컨설턴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컨설팅 신청과제의 성격, 수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입기간(시간), 기업의 현업 병행 및 학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며, 계획한 총 지원(수행)일수*를 위의 지원기간 동안 주 1~2회 이내 범위에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립 권장

아. 컨설팅은 1일 6시간 기준으로 지원기업을 방문 또는 방산 체제·부체제 기업,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방문 등을 통한 **현장컨설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컨설팅 추진 여건에 따라 컨설턴트와 기업 간 합의를 거쳐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으로 여러 날에 나누어 수행 가능

※ 컨설턴트는 매 컨설팅 수행일에 대해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날인) 후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과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 (각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하여야 함.

자. 컨설팅 착수금 또는 선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은 협약한 컨설팅 보수 전액*을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개인)*를 대상으로 지급함.

* 컨설턴트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해당 사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

※ 컨설턴트에게 소속기관(회사)이 있더라도 컨설턴트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차. 컨설팅 진도점검*은 컨설팅 수행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기간의 1/3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기업을 방문 또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함.

※ 컨설턴트는 컨설팅 진도점검(지원기간 중 1회)을 위해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관리 간 진도/성과 미흡, 지원기업/컨설턴트의 비협조 등 문제가 식별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수행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방문점검 가능

카. 컨설팅 최종평가*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의 목표 달성 및 성과에 대해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 대면평가*를 실시함.

※ 컨설턴트는 컨설팅 최종평가를 위해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날인) 후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은 협약한 기간 내에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한 후 수행기관에 위의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미완료 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함.**

* 지원과제별 종료 시점에 따라 '23년 12월 또는 '24년 4월 실시 예정

타.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규정·협약 위반, 또는 과제 수행관리 과정 및 진도점검 시 “지원과제 중단” 처분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 **컨설팅 보수 미지급***

*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

파.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86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름.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하. 컨설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컨설턴트는 신청 절차, 컨설팅 과제 수행계획 수립, 평가 절차 등 관련하여 신청 전 수행기관과 상담 (아래 문의처 참조)하시어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장합니다.

7 문 의 처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2-3270-6048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턴트 검색·매칭,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행정 사무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4948)

붙임 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2. 제출 자료·서류 목록

3.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4.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5.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 [**별첨** : 협약 일반조건]

붙임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① 신청 희망 기업은 컨설팅 분야 및 지원 세부분야를 선택한 후 **수행기관 상담***

* 신청 상담 : 02-3270-6048 / 6098

② 수행기관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신청 (무료,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요)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02-3270-6098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정회원사/준회원사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을 별도로 해주셔야 컨설턴트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가입(유료)과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혼동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에 유선 문의(상담)하시면 신속한 확인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02-3270-6098)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이 승인*된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재접속

* 승인 메일 수신 또는 유선 확인 (02-3270-6098)

⇒ “로그인*”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로 들어와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턴트 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컨설턴트 정보 열람*** (필요시 수행기관 상담)



* 컨설턴트 정보는 지원 세부분야별 및 컨설팅 가능지역별 검색값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컨설턴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을 통해 검색을 도와드리므로, 수행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02-3270-6048)

④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별한 후, **개별 접촉** (유선, 대면 등)하여 **상담 (자율적 매칭)**

⑤ 기업 상담 결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컨설팅 내용 및 지원기간(일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컨설팅 수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⑥ 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턴트가 작성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반 **제출서류***와 함께 상기 제출처로 **전자우편(E-Mail)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붙임2] 참조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02-3270-6098)

붙임2
제출자료 · 서류 목록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수	①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③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⑦	최근 2년(2022, 2021)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⑧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⑨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컨설턴트는 서명 가능
해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협약서	우대 점수 부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근 2년간(공고일 현재, 선정일 기준)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 고용 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우대 점수 부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증
		방산기관/방산업체 대상 납품실적, 또는 방산분야 기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연구개발 증명서, 납품계약서, 공장등록증, 국방벤처 지원사업/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등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 관련 건)	대면평가 시 참고
		기술성 관련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등)	대면평가 시 참고

붙임3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재무상황 (10점)	부채비율	4.0	3.2			2.4	1.6		0.8	
	매출액증가율	3.0	2.4			1.8	1.2		0.6	
	매출액영업이익률	3.0	2.4			1.8	1.2		0.6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및 납품 실적	5	4			3		2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10	9	8		7	6	5	4	3
컨설팅의 목적성 (15점)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과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5	4	3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5	4			3		2		
수행방안 의 적정성 (40점)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력, 전문성, 최근 5년간 컨설팅 실적 및 평가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기대효과 (20점)	컨설팅 지원의 기대효과의 구체성 (정량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10	9	8		7	6	5	4	3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진출 또는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8		7	6	5	4	3
평점 계		() 점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감점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3조제5항 및 [별표1] * 전체 평가점수의 3% 범위에서 합산하여 적용, 감점사유는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감점만 적용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1.5%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 * 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1%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처분		△1%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		△1%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		△1%								
총 점(우대·감점 합산)		() 점								
종합의견										

붙임4

컨설팅 수행시간 · 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팅 수행시간 인정 조건

○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한 현장컨설팅만 인정

※ 지원기업의 현장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으로 이틀에 나누어 수행 가능

○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컨설팅의 인정 범위

가.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컨설턴트가 지원기업을 방문하는데 드는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컨설팅 수행 시간으로 불인정

나. 기술·제품소개, 마케팅, 협력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의 목적으로 방산관련 기관(군부대 포함) 또는 방산 체계·부체계기업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이를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

다. 방산 관련 전시회 등 참가 활동을 통한 컨설팅

* 단, 단순 참가/참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참가 및 수행해 왔던 수준 대비 컨설턴트가 참여·지도함으로써 차별화 된 활동이 이루어진 사항을 수행일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산출물을 통해 증빙하여야 함.

라.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활동

○ 컨설팅 수행 불인정

가. 협약 체결, 기업 일반현황 파악, 또는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나. 지원기업을 동반하지 않고 컨설턴트 단독으로 활동한 시간

다. 컨설팅 수행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또는 연구를 위한 시간, 또는 컨설턴트 단독으로 컨설팅 산출물을 준비한 시간

* 지원기업과 함께 산출물을 생산한 시간은 인정

라. 컨설턴트가 지원기업을 방문하는데 드는 준비 및 이동시간

마. 지원기업을 제외한 컨설팅 장소(방산관련 기관, 체계·부체계기업, 전시회장 등) 방문을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 중,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은 6시간 이상 현장 수행이 원칙

바. 전시회 등을 단순 참가/참관 또는 외부 세미나/교육 등을 단순 청취한 시간

사.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등 작성을 위한 시간

아. 기타 수행기관이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항(예시 : 협약한 과제수행계획 이외의 내용 등)을 수행한 시간

※ **컨설팅 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각종 결과물(실물의 경우 사진), 자료 등
 - 외부 기관/기업 등과의 미팅, 전시회 등 참가활동의 경우 회의록(필수)*, 사진, 상대방 명함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회의록은 수행일지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등 집체교육 시 교육자료만으로는 산출물로 불인정하며, 교육자료와 함께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행 외의 시간에 준비하여 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목적에 부합한 각종 자료 등
 - * 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법령·규정 자료 포함)는 불인정
 - 컨설턴트가 과제수행계획서에 (예상)산출물로 제시한 사항
 -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 ※ 문서, 자료, 사진 등 산출물이 지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인 경우 민감한 내용은 가림 처리하여 제출
- ※ 분량이 방대한 문서, 자료 등은 문건의 표지 및 목차 등을 파일로 우선 제출하고, 실제 내용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대면평가) 시 확인
- ※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그 자체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5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안)

제1조(협약의 목적) 컨설턴트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협약기간) 컨설팅 지원(수행)을 위한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23년/24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컨설팅 과제) 과 제 명 기 재

제4조(컨설팅 보수) ① 컨설턴트 과제 수행에 대한 컨설팅 보수는 컨설팅 지원일수와 전문기관이 정한 보수 단가(1일 757,000원)로 산정한다. 이때 기업부담금은 보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지원일수	컨설팅 보수	
00일	정부지원금(100분의 75)	0,000,000원
	기업부담금(100분의 25)	0,000,000원
	합 계	00,000,000원

②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아래 수행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납부한다.

수행기관 계좌	KEB하나은행 209-890061-31504	예금주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	--------------------------	--------------------

③ 수행기관은 컨설팅 최종평가 결과 과제 수행이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때 제①항의 컨설팅 보수를 아래 컨설턴트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컨설턴트 계좌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
---------	--------------------------	-----------

제5조(협약문서) ① 협약문서는 이 협약서(특수조건)와 협약일반조건(별첨서류 포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지원기업, 컨설턴트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첨부 1> 협약일반조건 <첨부 2>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20 . . .

수행기관

법 인 명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자등록번호 : 105-82-0371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13층 (도화동, 성우빌딩)
대 표 자 : 김 유 진 (인)

지원기업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컨설턴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 첨 : 협약 일반조건(안)

수행기관, 지원기업, 그리고 컨설턴트는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책임·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2023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각 협약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전문기관) 규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규정), 그리고 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수행기관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 지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의 수행 및 진도, 성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과제수행 점검 및 평가를 지원·수행하며, 협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보수를 지급한다.
2.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컨설팅을 성실히 지원받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관련 요청 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
3. 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위원회가 컨설팅의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 등을 조정·확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이 승인한 최종본을 말한다. 이하, 수행계획서)에 따라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충실하고 친절히 제공하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성실히 제출한다.

제3조(협약특수조건) 협약기간, 컨설팅 과제, 보수 등은 협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컨설턴트는 협약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다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4조(과제 및 경비) 특수조건제4조의 컨설팅 보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컨설팅 수행에 소요되는 컨설턴트 본인에 대한 경비는 컨설턴트가 부담한다.

제5조(협약당사자 의무) ① 협약당사자는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며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원활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제반 정보나 기술,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고, 협약 종료나 해약 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수행에 대한 보완 또는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출물 또는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을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전문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에게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업무 담당자의 교체, 컨설턴트 신변의 주요 변동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컨설팅 수행기간 및 수행)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컨설턴트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은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의 현장컨설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하루 6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더라도 초과된 시간은 다음 수행일의 수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지원기업의 현장 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수행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지원일수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씩 여러 날에 나누어** 수행하거나 당초 계획한 일자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자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내용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제7조의 수행일지에 그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하고 수행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순서와 별도로 컨설팅의 범위나 진도, 성과, 수행결과물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다.

⑤ 지원기업은 컨설턴트에게 수행계획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컨설턴트 또한 그러

한 사항을 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⑥ 컨설팅 수행시간으로 인정하는 수행 내용 등의 조건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수행일지 및 산출물 제출) ① 컨설턴트는 각 컨설팅 수행일에 대해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컨설팅 수행 내용과 성과 등을 기록한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과 함께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산입)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 까지 제출한다.

② 제6조제②항의 수행시간이 미충족되었거나 제6조제⑤항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컨설턴트에게 추가 수행을 요구하거나 특수조건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액은 시간당 금액(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단가를 6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미충족된 시간(시간 단위 정수로 따짐)으로 산정하며,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은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③ 수행일지의 작성 방식 및 컨설팅 산출물로 인정하는 수행결과물의 기준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때 수행일지나 제8조제③항의 진도보고서, 제9조제①항의 완료보고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진도점검) ① 컨설팅 진도점검은 운영규정 제17조 및 세부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업 현장점검 또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진도점검 시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 제출, 출석 등 수행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방문 또는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진도점검을 위해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한 기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도점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가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식별된 경우 수행기관은 “지원과제 중단”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완료 보고 등)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따른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한 후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컨설팅 완료확인서에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협약 종료일까지 모든 컨설팅이 수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보고서 또는 최종 성과산출물 등이 수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컨설턴트는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평가) ① 컨설팅 최종평가는 운영규정 제19조 및 세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9조의 완료보고서를 포함한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성과, 목표 달성여부 등에 대해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 대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때 협약당사자는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평가(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수행 결과가 미흡하여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3조제①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수행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컨설팅 지원일수는 기존보다 상향조정 할 수 없다.

1. 컨설팅 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당초의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계획서의 변경 또는 수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요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지원기업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첨부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가 모두 기명날인한 협약변경신청서
2.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수행계획서

③ 수행기관은 요청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제②항 각 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부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승인이 통보된 때에는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 조건을 적용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의한 해약” 또는 “해약 사유 발생에 따른 해약”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허위·과장, 외부압력·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2.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지원사업 공고문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별첨1>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혜 사실이나, <별첨2>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협약 체결 또는 수행계획서의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컨설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6.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컨설팅을 지원받았거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허위·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제5조의 의무, 제9조의 완료 보고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여, 수행기관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경우
10.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의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진도점검 또는 제10조의 최종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2. 컨설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3. 지원과제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4.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지원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부도, 휴·폐업, 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기타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심의 결과 협약의 해약이 결정되었거나, 또는 제8조제④항 후단의 심의 결과 “지원과제 중단” 결정된 경우, 이 협약은 수행기관의 서면통보로써 즉시 해약된다.

제13조(컨설팅 보수의 미지급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수조건 제4조의 컨설팅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협약의 해약이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에 의한 경우
2. 제10조의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
3. 협약의 해약이 제12조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협약의 해약이 제12조제①항 제9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경우,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미지급 금액에 관한 결정 포함)에 의해 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일부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담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과제수행 경과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처리는 지원기업과 컨설턴트 간 협의에 의한다.

④ 컨설팅 보수의 지급이 완료되고 협약이 종료된 후라도 지원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운영규정·세부규정 또는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2조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운영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 세부규정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전문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수행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운영규정 제40조 및 세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에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처분을 보류하고, 전문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확정 처분한다.

제15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컨설팅의 최종 성과산출물 및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컨설턴트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보수(잔금)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에 귀속된다.

제16조(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① 운영규정 제24조 및 세부규정 제20조에 의해,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5년간 방산 분야 참여 실적 등 컨설팅 지원의 성과, 만족도 등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이 지원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열람·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반한 당사자가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7조(일반적 손해)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운영규정·세부규정 또는 이 협약의 위반, 법령의 위반, 고의·과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 컨설팅 수행결과물, 전문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운영규정 및 세부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이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9조(재판관할) 이 협약의 관할은 수행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별 첨>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1부.
2.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 청렴서약서 각1부.
3. 지원기업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컨설턴트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1부.

끝.